

<붙임1>

**남강남강담면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18. 01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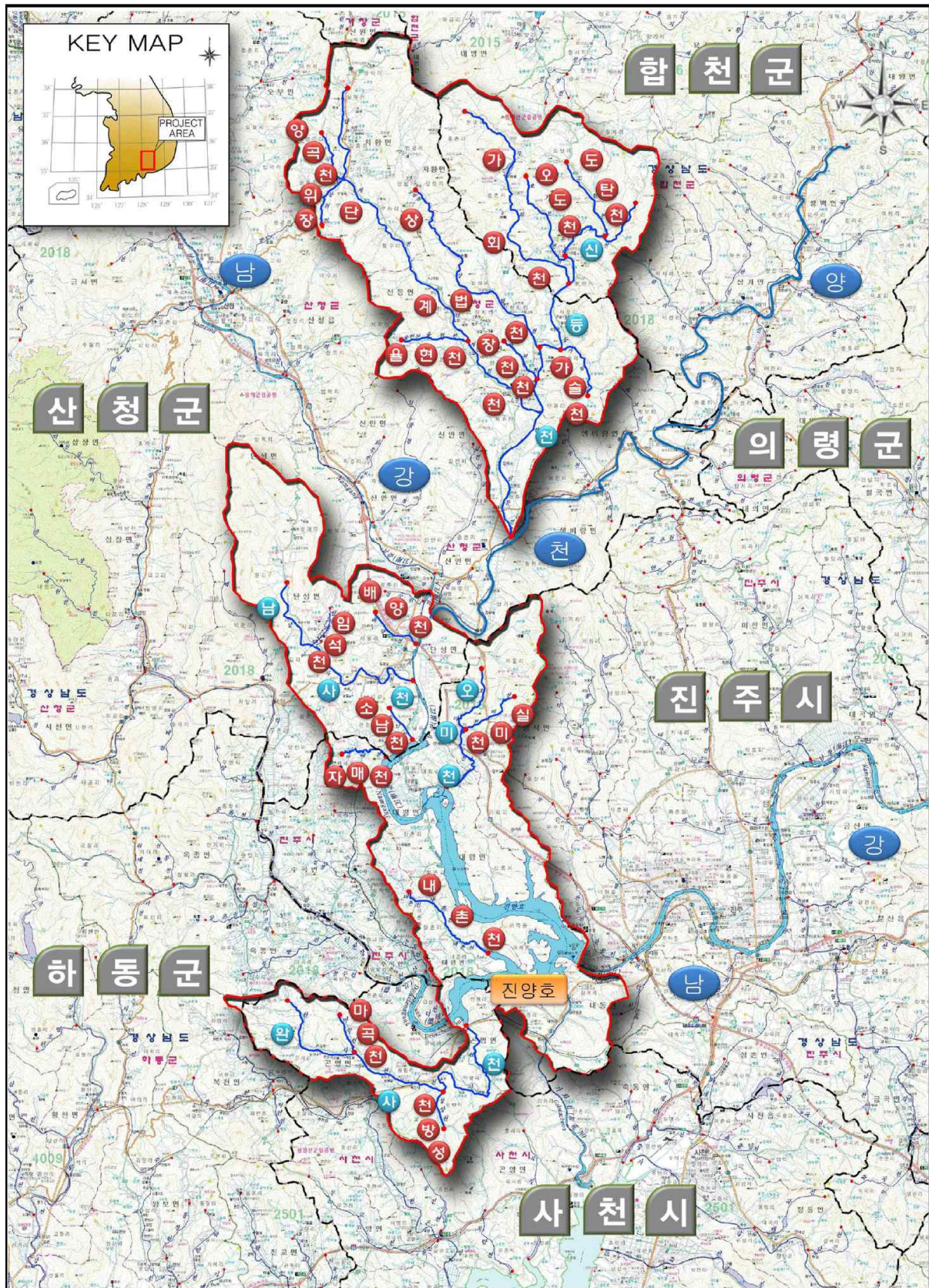
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 일원
- 연 장 : L=132.25km(지방하천 22개소)
- 계획 수립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표 1 - 1 > 계획의 범위

번호	하천명	하천 등급	시 점	종 점	하천연장 (km)
1	신등천	지방	경남 합천 가회 장대	경남 산청 신안 양천(지방) 합류점	22.20
2	도탄천	지방	경남 합천 가회 도탄	경남 합천 가회 신등천(지방) 합류점	4.90
3	오도천	지방	경남 합천 가회 오도	경남 합천 가회 신등천(지방) 합류점	3.00
4	가회천	지방	경남 합천 가회 둔내	경남 합천 가회 신등천(지방) 합류점	9.00
5	기술천	지방	경남 산청 신등 간공	경남 산청 신등 신등천(지방) 합류점	3.30
6	상법천	지방	경남 산청 차황 법평	경남 산청 신등 신등천(지방) 합류점	12.50
7	장천천	지방	경남 산청 신등 장천	경남 산청 신등 신등천(지방) 합류점	2.24
8	단계천	지방	경남 산청 차황 장박	경남 산청 신등 단계천(지방) 합류점	21.30
9	양곡천	지방	경남 산청 차황 양곡	경남 산청 차황 단계천(지방) 합류점	2.50
10	장위천	지방	경남 산청 차황 장위	경남 산청 차황 단계천(지방) 합류점	2.40
11	울현천	지방	경남 산청 신등 울현	경남 산청 신등 단계천(지방) 합류점	3.20
12	배양천	지방	경남 산청 단성 사월	경남 산청 단성 남강(국가) 합류점	1.90
13	남사천	지방	경남 산청 단성 청계	경남 산청 단성 남강(국가) 합류점	13.10
14	입석천	지방	경남 산청 단성 입석	경남 산청 단성 남사천(지방) 합류점	2.80
15	소남천	지방	경남 산청 단성 소남	경남 산청 단성 남강(국가) 합류점	0.80
16	자매천	지방	경남 진주 수곡 자매	경남 진주 수곡 남강(국가) 합류점	2.26
17	오미천	지방	경남 진주 명석 외울	경남 진주 명석 남강(국가) 합류점	2.90
18	실미천	지방	경남 진주 명석 팔미	경남 진주 명석 오미천(지방) 합류점	1.40
19	내촌천	지방	경남 진주 수곡 내촌	경남 진주 대평 덕천강(국가) 합류점	4.10
20	완사천	지방	경남 사천 곤명 삼정	경남 사천 곤명 덕천강(국가) 합류점	10.80
21	마곡천	지방	경남 사천 곤명 마곡	경남 사천 곤명 완사천(지방) 합류점	2.55
22	성방천	지방	경남 사천 곤명 성방	경남 사천 곤명 완사천(지방) 합류점	3.10
계			지방하천 22개소		132.25



< 그림 1 - 1 > 계획하천 위치도

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대기질 및 소음·진동 등의 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1. 1, 환경부」자료를 참조하여 설정함

< 표 2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범위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본 계획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하천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본 계획 수립 전·후에 대한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계획하천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수립에 따른 생태계 영향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200~300m이내 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수립에 따른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등, 경관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계획수립에 따른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영향	·계획하천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수립에 따른 대기, 소음·진동 등의 영향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200m 이내 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수립에 따른 자원순환의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영향권 지역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변화	·계획하천

2.2 평가항목의 설정

- 금회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와 대상사업별 주요 평가항목을 비교·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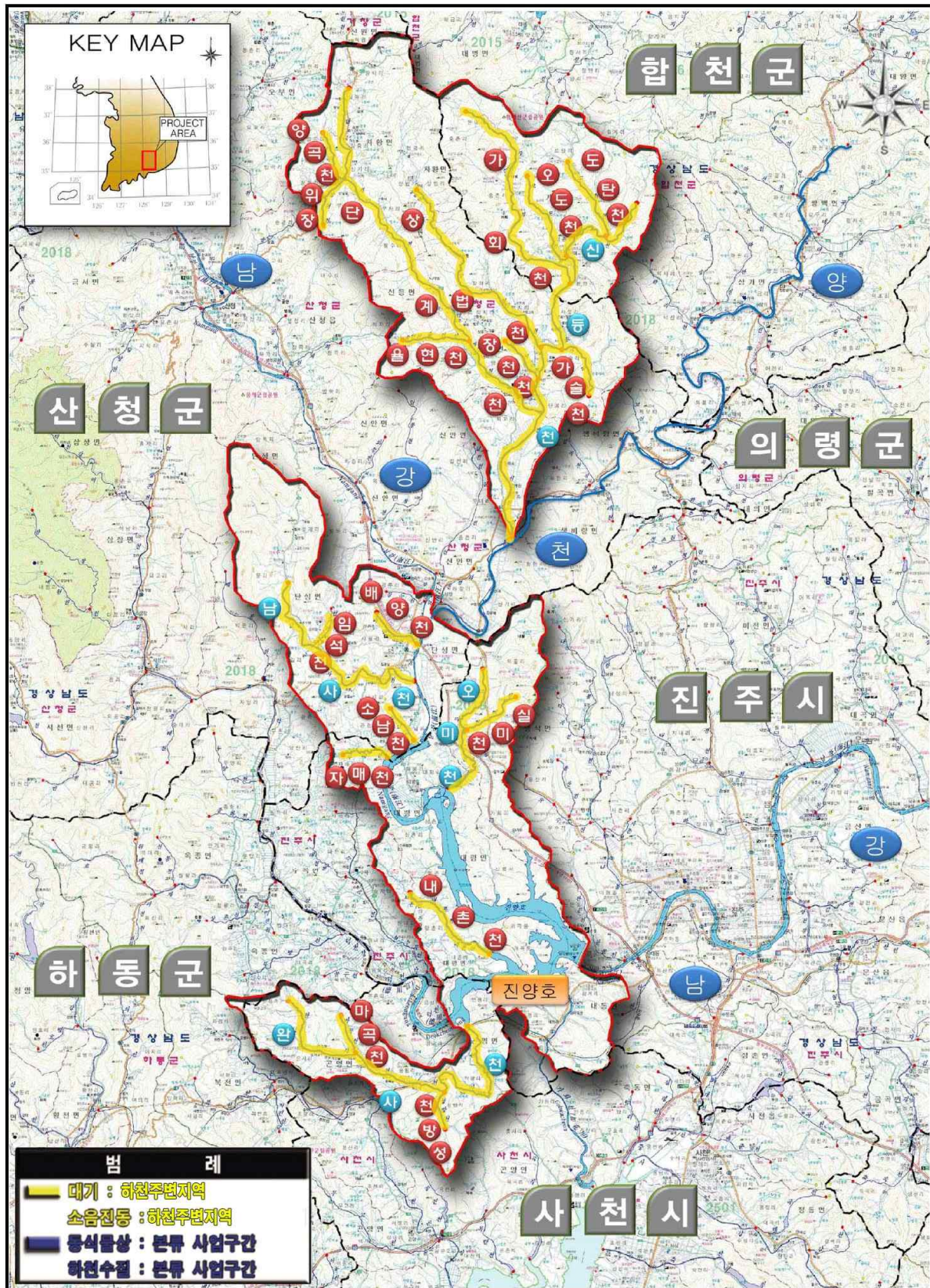
< 표 2 - 2 >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설정사유	비 고
중점평가 항목	자연환경의 보 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보호종 변화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의 훼손 및 동·식물상의 변화여부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계획지역의 지형·지질 특성파악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자연환경자산	·공사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상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수질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용하천 수질변화 ·주변 비점오염원의 수계 유입시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	
			수리·수문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홍수량 변화에 따른 시설물 변화	
일반평가 항목	생활환경의 안 정 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계획시행에 따른 기상현황	
			대기질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공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공사시 장비가동 따른 온실가스 배 출물질 발생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발생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공사장비 및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 화 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양	·공사시 장비가동 및 폐기물에 따 른 토양오염 발생	

2.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표 2 - 3 > 항목별 평가범위 설정

평가항목			평가사항	평가범위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공사시 수생 및 수변식물의 식생의 변화 ·육상 및 육수동물상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200~300m이내 지역
	지형 및 생태축보전	지형·지질	·하천환경정비시 하천지형 변화 및 영향	·계획하천 구간
		자연환경 자산	·공사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상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영향권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하천환경정비시 주변 지역의 미 치는 경관상의 영향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영향권 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하천환경정비로 인한 계획하천 의 부유토사 증가에 의한 영향	·계획하천 구간
		수리·수문	·하천환경정비시 홍수량 및 홍수 위 변화 등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영향권 지역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하천환경정비로 인한 주변지역 기상영향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영향권 지역
		대기질	·하천환경정비시 주변 지역의 대기질 영향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영향권 200m 이내 지역
		온실가스	·하천환경정비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 및 영향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영향권 지역
		소음·진동	·하천환경정비시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 영향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영향권 200m 이내 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건설, 생활 폐기물 발생 및 영향	·계획하천 구간 및 주변 영향권 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 이용	·계획하천 구간의 토지이용 변화	·계획하천 구간
		토양	·하천환경정비 주변 지역 토양 영향	·계획하천 구간



< 그림 2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평가항목			예측 및 분석기법	관련자료
생활환경 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계획수립지역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분석·정리	·기상연보
		대기질	·현장실측을 통한 대기질 분석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 생으로 인한 대기질 변화 및 저감 대책 검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온실가스	·조사자료 분석	·에너지관리공단 통계 ·통계연보
		소 음 진 동	·현장실측을 통한 현황 소음·진동도 조사 ·공사시 장비투입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영향 검토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건설기계류 소음특성 ·점음원 거리감쇠식, 합성소음도 산출식, 진동 거리감쇠식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발생량을 기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 분석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2013, 환경부 ·건설표준품셈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하천정비에 의한 토지이용변화 예 측·분석	·기본계획 보고서 및 중·평면도 ·현장조사 병행 ·통계연보
		토양	·공사시 폐유발생에 따른 토양오염 물질 발생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2.5 대안의 선정

- 대안 설정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여야 함
- 대안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131호"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4.01, 환경부"의 내용을 기초하여 계획의 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이비, 시기·순서, 기타 등 6개의 항목 중 계획비교(행정계획수립 및 미수립) 및 수단·방법 등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함

2.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본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하천은 경상남도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에 위치하고 있음.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개발기본계획의 평가 대상지역인 경상남도 경상남도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와 협의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2.6.1 스코핑 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것임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임

2.6.2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휴일제외) 범위에서 개발계획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토록 공고할 계획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홈페이지 또는 본 계획하천 내 해당 지자체인 경상남도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임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발계획 대상지역인 경상남도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 초안을 게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계획수립기관 및 개발계획 대상지역인 경상남도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 등에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공람장소는 개발계획 대상지역인 경상남도 거창군, 합천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임

2.6.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할 것이며, 설명회 및 공청회 장소는 경상남도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임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가 있을 경우 개최할 것임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시에는 일간신문 1곳과 지역신문 1곳에 각각 1회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공고를 시행할 것임(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사항에 주민설명회 공고 포함시 별도의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제외)

< 표 2 - 5 >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계획

구 분	공 란			설명회	비고
	장 소	공고매체	기 간		
공람 · 공고	경상남도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와 협의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각 1개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eiass.go.kr/)	20~40일간 (공휴일제외)	해 당 지자체	

- 주) 1. 설명회 개최장소 :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2. 공청회 : 주민들의 별도 개최 요구가 있을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개최할 예정

2.6.4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 따라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토록 할 계획임

2.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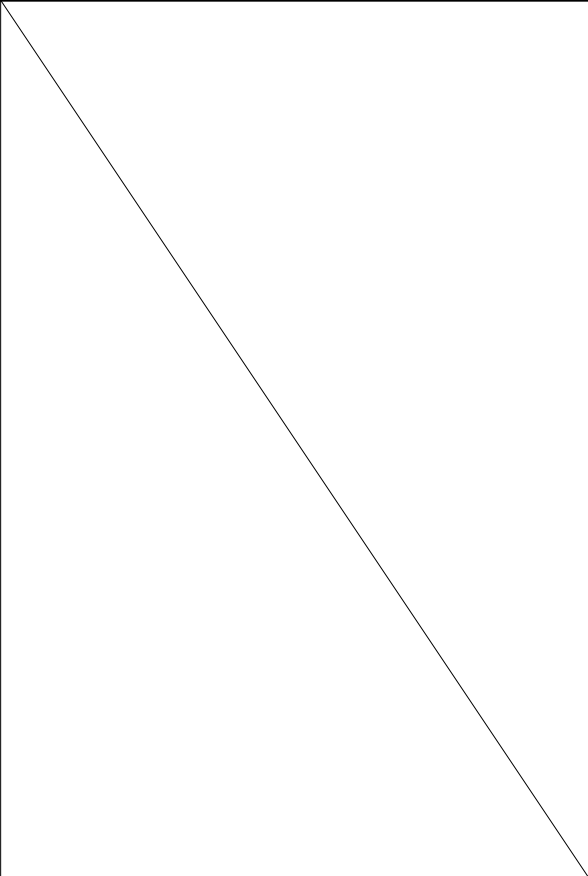
- 주관부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심의기간 : 2017년 11월 29일 ~ 12월 15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심의위원

소 속	직위	전문분야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국장	위원장	
	계장	간 사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기획 과장	협의기관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형보)		협의기관 추천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조용정 담당사무관	광역자치단체	
합천군 환경위생과	정창화 과장	지방자치단체	
사천시 환경위생과	신현범 과장	지방자치단체	
산청군 환경위생과	허철영 과장	지방자치단체	
진주시 환경정책과	박원석 과장	지방자치단체	
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사무국장 (이인식)		시민단체
부산대학교	교수 (오광중)		위원장 추천
주민대표(합천군)	군의원 (배몽희)		주민대표
주민대표(사천시)	강열근		주민대표
주민대표(산청군)	류근상		주민대표

2.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붙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서면심의 의견서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총괄의견 ○ 동 계획은 남강(남강댐)권역 지방하천 22개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 및 하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계획하천 중 보전가치가 높은 구역(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공원 및 우수 산림역 등과)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를 분류군에 따른 특정 및 생태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설정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사업구역 경계선 설정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시 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해당 하천별로 현황시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제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 -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한 보전하는 방안 강구 ○ 기존 인공시설물에 대한 치수적·생태적 기능분석을 통한 존치·개설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철거하거나 자연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대안은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 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만이 아닌 하천개수 외 제해방지 및 치수를 위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홍수방어(조적)대책 등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하천생태계의 복원에 효과가 있으며 식생의 도입이 우수하고 호안의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사의 환경친화적인 공법 비교·검토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현황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 설정, 예측 모델 입력 및 검증, 사후조사와 비교·검증 등의 목적을 가지는 바, 영향예측 및 사후조사와 연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시기 및 지점, 항목 및 횟수 등은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함. ※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15.3, 환경부)」 등 참고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조사시 계절 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고 조사결과를 지형도에 표기 - 동·식물상 조사시 하천 구간별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의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제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문헌조사의 경우 자연환경조사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추가자료(환경영향 평가서, 하천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 수행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태자연도 및 식생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영향 저감 방안 제시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 수환경의 보전 - 하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등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시행 시 오탁수,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 계획홍수위 및 하상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면도 제시 - 계획평면도상에 하천구역(기존 및 변경 구분), 축조 및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하천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 사업지역중 북계구간이나 콘크리트 하상구간은 가능한 철거하여 식생의 활착이 용이한 자연형 하천으로 개량하고 수변식물 식재 등을 통한 각종 수생동물의 서식을 유도하도록 계획 -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 공장, 주거지 등에서 발생하는 점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 방안 검토·제시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하천자연도 평가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관리대책 수립 - 토양함몰을 추가하여 지강물 철거과정 또는 공사시 발견될 수 있는 오염 토양의 현황 파악 및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제시 - 온실가스 검토대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9.)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 영향 여부 검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6. 기 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고 동 계획수립권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닐 경우 위임 규정을 제시하고 향후 해당 하천의 개별 하천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를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전라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017.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 □ 총괄의견 ○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오염 피해 저감대책은 물론 민원 발생 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 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다수의 대안을 도출하여 환경상 최적의 대안을 비교·분석하고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법상 정하여진 의견수렴 절차 외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당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대책 및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 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지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정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2017. 12. 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판 의 건 ○ 본 계획은 수리·수문 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며 하천면과 유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 및 자연보전, 친수기능을 고려한 공간기능 설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나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설정하기 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시행 시 예측되는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주사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각 검토항목별 환경영향을 검토 및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였음. 3. 대안 ○ 계획비교와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향후 공사 사 지 토사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의 발생, 절성토로 인한 지형 및 경관변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에 따라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하천정관개선 및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2017.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판 의 건 ○ 동 계획은 하천 환경적 측면의 여건변화와 하천관리를 위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하천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수자원 종합개발 지점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안 및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나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설정하기 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 문헌주사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였음 3. 대안 ○ 환경적 목표와 기존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금회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와 대상사업별 주요 평가항목을 비교·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서 결정된 평가항목 등을 공개하여 주민이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검토하여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하천정관개선 및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계획 등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 2017.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판 의 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이므로 환경측면에서 고려되어야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환경과의 조화성에 대하여 계획지침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을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기질(악취포함) 소음·진동, 수질오염, 토양오염, 동·식물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대안 ○ 대안설정에는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생물다양성지리지보전 - 동·식물상 조사시에는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지질파취수를 선정 하여야함 ○ 주변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심사대상여부를 검토 - 사업시행시 주요조망지점에서의 경관 훼손 여부검토하고 사업시행전후 경관변화를 비교 검토하여 예측 저감방안을 수립 ○ 수환경보전 - 사업지역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서 사업 시행시 오·폐수 비점오염물질을 통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 마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대상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영향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2017. 12.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판 의 건 ○ 별도 협의의견 없음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17.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판 의 견 ○ 하천기본계획 변경(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이용방향, 바람직한 하천모습, 하천환경(수환경,공간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환경성확보 및 환경관리방안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의 타당성'보다는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이 중점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하천기본계획(변경) 대상 개소수가 많아 개별 하천별 특성을 반영한 검토에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하천을 특성별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바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3. 대안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가능한 유역내 오염원 및 토지이용상황 등 현황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현황특성에 맞게 하천별, 구간별 정비방향(Concept)을 설정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의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6. 기 타 - 2017. 12 . 18 . 	
--	---